

# 보험계약준비금 적립기준

제 정 : 1994.12.14

1 차 개 정 : 2001.12.13

2 차 개 정 : 2004.12.29

**3 차 개 정 : 2010. 6.18**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무역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준비금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험계약준비금) ①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책임준비금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

제 3 조(미경과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책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적립하는 보험료로서 계상일 현재 무역보험계약 건별로 산출된 유효계약보험료 중 미경과기간(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역보험종류별로 계상한다.

제 4 조(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계상일 현재 사고계류금액중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및 보험금청구금액중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 다만, 이의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는 당해 금액을 차감한다.
3.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계류금액
4. 계상일 현재 사고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청구는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다만, 보험금이 수년에 걸쳐 지급 예정되는 사고건의 경우 예상회수금을 제외한 잔액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계상한다

제 5 조(비상위험준비금) ①비상위험준비금은 거액보험사고 및 환변동보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적립금액은 당해연도의 경과보험료(당해년도 수입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환입의 합계액에서 당해연도의 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립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립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매년 누적적으로 계상한다.

②공사사장은 동일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면서 추정보험금 총액이 거액인 보험사고건의 보험금 지급 또는 환변동보험 손실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기준은 1994년12월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

이 기준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3)

이 기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